

수입으로 인한 산업영향 조사 개시공고

(상공부공고 제87-76호)

대외무역법 제32, 33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67조의 규정에 의거 서형산업(주)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영향조사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사를 개시함을 공고합니다.

1987년 12월 24일
상 공 부 장 관

1. 조사신청 개요

- 가. 신청업체 : 서형산업(주) (대표: 유우형)
- 나. 신청일자 : 1987년 11월 24일
- 다. 신청품목 : 세라믹압전착화소자(CCCN 9810-0301)
- 라. 신청사유

동 신청품목은 신청업체가 금년초 개발에 성공한 제품으로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되어 왔음. 신청업체는 그러한 수입이 신청업체의 경영에 지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신청하고 있으며, 국내 가격체계, 고용, 임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청업체는 세라믹압전착화소자에 대해 수입량의 조절등 적절한 조치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

2. 조사개시 결정문 요약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외무역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또 산업 영향조사의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상공부고시 제 87-22호) 제10조의 기각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서형산업(주)의 조사 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개시하고자 함.

3. 조사개시 결정의 주요 내용

- 가. 조사번호 : 대외무역법 32-1
 - 나. 조사품목 : 세라믹 압전착화소자(CCCN 9810-0301)
 - 다. 조사개시일 : 1987년 12월 24일(목)
 - 라. 조사기간 : 1987년 12월 24일(목) ~ 1988년 6월 18일(토)
 - 마. 조사일정
- 1987년 12월 24일 : 조사개시(공고)
○1988년 1월 9일 :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단구성
○1988년 1월 11일 : 이해관계인에 질문지 송부 및 ~ 2월 27일 취합

- 1988년 3월 26일 : 이해관계인의 공청회전 의견 제출마감.
 - 1988년 4월 11일 ~ 4월 16일 : 공청회
 - 1988년 4월 23일 : 이해관계인의 공청회 후 의견 제출 마감
 - 1988년 6월 18일 : 조사종료
- 4. 기타 행정사항**
- 가. 정보의 제공이나 문의 : 본 조사와 관련 조사참가 희망자의 신청, 자료의 제출 또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주소로 신청,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람.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제 2종합청사 상공부 무역조사관실
전화번호 : 500-2575~2577, 504-0106
 - 나. 법적근거 : 본 조사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음.

대외무역법 제32조 내지 제43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78조 수입에 의한 산업영향 조사의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상공부고시 제 87-22호, 87. 8. 6제정)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 등에 관한 규정(상공부 고시 제87-23호, 87. 8. 10제정)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품질보증제 실시에 따른 품질보증서 표준 모델

공업진흥청에서는 1988. 1. 1부터 공산품 품질보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품의 판매시는 소비자에게 품질보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품질보증제를 실시하는 업체는 물론이고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품목에 관련된 업체에서 품질보증서에 대한 문의가 많이 제기되었다. 모델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적용대상품목을 게재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제 1안은 내구성 소비재, 비내구성 소비재에 관계없이 모든 품목에 이용될 수 있고, 제 2안은 비내구성 소비재 품목에 한해 이용될 수 있으며, 제 3안은 만년필, 책가방을 제외한 문구제품, 어린이용품 등에 한해 이용될 수 있다.

공지사항

적 용 대 상 품 목

※전자·전기분야만 발췌했음.

구 분	부 문	품 목 명	
		현 행	추 가
내구성 소비재 (73 품목)	- 전기전자 (41)	TV수상기, 전 자레인지, 전 기솔, 라디오 수신기, 카세 트녹음기, 전 기축음기, 전 기보온밥통, 전기주전자, 전기후라이팬, 전기스토브, 전기다리미, 전기장판, 전 기요, 전기냉 장고, 전기세 탁기, 전기냉 방기, 선풍기, 전기소제기, 복사기, 전기 약탕기, 전기 오븐, 전기남 비, 전기토스 타, 전기머리 인두, 환풍기, 전기믹서, 모 발건조기, 전 기면도기, 전 기연탄가스, 배출기, 전기 펌프, 전기가 습기, 소형전 압조정기, 전 근로(33)	VTR, 주서 기, 전기탈 수기, 자동 판매기, 형 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전기문걸이, 도어폰(8)
		비내구 성소비 재 (27 품목)	- 전기제품 (4)

수출품 품질검사 및 검사수수료율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

공업진흥청고시 제88-1호
공업진흥청고시 제87-3044호('87. 12. 31) 수출
품 품질검사 및 검사 수수료율 등에 관한 규정중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8. 1. 4
공업진흥청장

품 목 번 호 H . S	세부품목	수수료율 (%)	지정검사 기관	관 할 지 역
8539	필라멘트 램프 또 는 방전 램프(실 드비임 램프유니 트와 자외 선램프또 는 적외선 램프를포 함한다)와 아아크램 프 *방전램 프(자외 선램프를 제외한다) 형광램프 (열음극 형의 것에 한한다)	0.18	한국전기 전자시험 검사소 충남지방 공업시험 소 전남지방 공업시험 소	전국(충 청남도, 전라남 도, 광주 직할시 제외) 충청남 도 전라남 도, 광 주직할 시

'88년도 상반기 자율관리기업 선정 신청 통보

공업진흥청에서는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 5 - 2 - 15조(자율관리기업)에 의거 '88년도 상반기 자율관리기업을 선정하고자 하니 해당기업은 '88. 1. 31까지 (첨부 1)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 "자율관리기업 선정에 대한 운용지침"에 의거 거래 사후 관리은행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해당업체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1. 자율관리기업 신청대상
 - 가.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2백만달러 상당액 이상인 업체, 수출유공으로 포상(훈, 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말한다)을 받은 업체('84년도 이후 포상받은 업체에 한한다.) 또는 중견수출기업.
 - 나. 무역법 허가를 받은 후 5년이상 경과한 업체다. 과거 3년간(수출유공업체의 경우는 과거 2년간) 미화 2천달러 상당액 이상 외화획득 미이행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는 업체
2. 구비서류
 - 가. 수출실적증명서(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3 - 9호 서식)
 - 나. 무역법 허가증 사본
 - 다. 사후관리은행장의 대응수출의무 성실이행 확인서(1항 다호의 사실확인 내용 포함)
 - 라. 자율관리규정
 - 마. 원료 등을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약속하는 각서

자율관리기업 신청시 각외국환은행(지점포함) 및 한국무역협회에서 검토요령
1. 외화획득용 원자재 사후관리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각외국환은행(본점 및 지점)에서는 자율관리기업의 신청을 '88. 1. 31까지 받아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동요건이 구비되었으면 '88. 2. 10까지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송부, 한국무역협회장은 선정요건을 다시 확인한 후 이에 합당할 경우 '88. 2. 20까지 공업진흥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 검토내용은,
 - 첫째 : 전년도 수출실적이 2백만달러 이상인 업

체 또는 수출유공으로 포상(훈·포상·및 대통령표창을 말한다)을 받은 업체('84년도 이후 포상받은 업체를 말한다) 또는 중견수출기업

둘째 : 무역업허가를 받은 후 5년이상 경과한 업체

셋째 : 과거 3년간(수출유공업체의 경우는 과거 2년간) 미화 2천달러 상당액 이상 외화 획득 미이행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는 업체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를 추천하여야 한다.

3. 만일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게 하여 검토 완료 후에 완비된 서류를 전부 공업진흥청에 '88. 2. 20까지 송부함으로써 자율관리기업 선정 추천을 마감한다.

보세공장 설영특허 대상물품 지정 예규제정 안내

관세청 예규 제98 - 1 - 0 - 64호

보세공장 설영특허 대상물품 지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관세법 제98조 제3항 및 보세공장 운영요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설영특허 대상물품은 별표와 같다.

1988년 1월 4일
관세청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98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의 예규는 폐지한다.

1. 관세청 예규 제98 - 1 - 0 - 60호 내지 제98 - 1 - 0 - 63호

별표 보세공장 설영특허 대상물품

1. 전자제품 및 부품
- 가. 텔레비전 수상기 및 그 부품
- (1) 텔레비전 수상기
 - (2) 텔레비전 튜너
 - (3) 텔레비전 고압트랜스(F. B. T)

공지사항

- (4) 텔레비전 음극선관 (C. R. T)
- (5) 텔레비전 진공관
- (6) T.V 브라운관 유리 (Glass Bulb)
- (7) 음극선관 모니터 (전화기 및 컴퓨터 포함)
- (8) 컬러텔레비전 부분품

- P.C Board Ass'y
- Antenna Terminal
- Tuner Ass'y
- Loop Antenna
- Speaker
- Cabinet Block

- (9) T.V & VTR Mixer
- (10) Earth Connector

나. 음향기기 및 그 부분품

- (1) 앰프
- (2) 라디오 수신기
- (3) 녹음기
- (4) 전 축
- (5) 카스테레오
- (6) 홈스테레오
- (7) 테이프덱
- (8) 포타블 스테레오
- (9) 카세트 레코드용 모터
- (10) 스피커 시스템
- (11) 헤드폰
- (12) 스피커
- (13) 음향기기용 Converter
- (14) 음향기기용 Plastic Cabinet
- (15) 음반용 음재생기능부 (Turntable, Compact Disc Player)
- (16) Car Stereo Booster (Auto Sound Amplifier)
- (17) Audio Timer (Audio 전자시계 또는 Programmer)
- (18) Audio Mixer
- (19) 편향요크
- (20) Equalizer (Audio Equalizer Amplifier 또는 Audio Graphic Equalizer Amplifier)
- (21) Car Stereo Tuner (카라디오용 포함)
- (22) Cord (Head Phone Walkman & RCA용에 한함)
- (23) Adaptor
- (24) 고정축전기

- (25) 가변축전기
- (26) 고정저항기
- (27) 가변저항기
- (28) 카세트 레코드 플레이어 (Radio, CD, T.V 및 Turntable 부착된 것 포함)
- (29) Music Center
- (30) 중간주파 변성기 (I.F.T/O.S.C)
- (31) Knob
- (32) 인쇄회로기판 (Printed Circuit Board)

다. Video Cassette Recorder 및 그 부분품

- (1) VTR
- (2) Video용 Booster
- (3) VTR'S Converter용 Filter Coil 및 Trans
- (4) Front Cassette Recorder
- (5) Video Cassette Recorder 및 동 부분품

라. 자동처리기계 (Computer)와 그 보조기기 및 그 부분품

- (1) 컴퓨터 (C.R.T) 터미널
- (2) 컴퓨터 프린트
- (3) 컴퓨터 및 동 부분품
 - Pixer Memory Board
 - Lower Supply
 - Pixet Processor Board
 - Main Memory Board
 - Mechanical Board
 - Hard Disk Drive
 - Flexible Disk Drive
 - Xebex Board
 - Key Board Ass'y
 - Color Monitor With Termination Board
 - Oem Mouse
 - 50' Monitor Cable
 - Man Processor Board
 - I/O Board
 - I/O Connector Board
 - Option Board
 - Connector Cable
 - Floppy Disk Drive
 - P.C Board Ass'y
 - Plastic Cabinet
- (4) 칼라그래픽 콘트롤러 및 동 부분품
 - Display Controller Board
 - Chassis

Final Ass'y
 Blication Kit
 Accessory Kit
 Color Display

- (5) 컴퓨터 P.C. I
- (6) 컴퓨터용 신호변복조기 (Modulator & Demodulator/Modem)

마. 통신기기 및 그 부분품

- (1) 전화기 (Cordlessphone 및 차량용 무선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동 부분품
- (2) 전화기 자동응답장치 (Telephone Answering Machine)
- (3) 전화교환기
- (4) 반송장치
- (5) 자동전자 전화기 (Computer Dailer)
- (6) 무선통신기
- (7) 인터폰
- (8) 통신용 보완기반 (Connector & Module)
- (9) 무선폭출 신호기 (Pager)

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 (1) 전원공급기 (Power Supply)
- (2) 매연경보기 (Smoke Detector)
- (3) 변성기
- (4) 가변저항기용 Element (가변저항기를 제조, 가공하는 보세공장에 한함)
- (5) Generator
- (6) Relay Board
- (7) 계전기

사. 계측기기 및 그 부분품

- (1) Panel Meter
- (2) 지시계
- (3) 지시계용 Moving Coil (지시계를 제조, 가공하는 보세공장에 한함)
- (4) Multi Tester
- (5) Battery Checker
- (6) 주파수측정기 (Multifuction Counter)
- (7) 파형관측기 (Oscilloscope)
- (8) Moisture & Light Meter
- (9) Oscillator
- (10) 피뢰기 (Arrester)
- (11) 정손박스
- (12) 정손박스용 Socket (정손박스를 제조, 가공하는 보세공장에 한함)

아. 기타 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

- (1) 관성항법 장치 및 그 부분품
- (2) 전자탐지기 (Radar Detector)
- (3) 원격조정 장치 완구 (Remote Control System Toy)
- (4) 전자게임 용구 (Video Game T.V Game Foot Ball Out Race Ruret Base Ball Game에 한함)
- (5) 완구용 인쇄회로 기판 모듈 (Toy's P.C.B, Module)
- (6) 전자계산기
- (7) 전자시계
- (8) Digital Clock Movement
- (9) 전자악기 (Key Board)
- (10) Satellite T.V Receiver With Down Converter 및 Low Noise Amplifier For Satellite T.V Receiver)
- (11) Satellite Antenna Tracker
- (12) Message Center 및 동 부분품
- (13) Fish Finder
- (14) 반도체 부분품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발광 다이오드)
- (15) 마그네트 헤드 및 동 부분품
- (16) Switch
- (17) Socket
- (18) Fuse Holder
- (19) Plug & Jack
- (20) 고주파코일
- (21) Coil (Degaussing Coil Audio용, T.V 용 포함)
- (22) Ferrite Core
- (23) S.W R Bridge
- (24) Alnicp Cast Magnet
- (25) Electric Tuning Fork
- (26) 기억소자 (Memory Plane)
- (27) Lead Frame
- (28) Mind Reader
- (29) Cassette Tape 및 동 부분품
- (30) 칩 (Die)
- (31) Transformer
- (32)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 (33) 전자후레쉬 (Electronic Flash)
- (34) 발광표지판 (Led Display)
- (35) 표시관 (N I .T)

* * * * * 공지사항 * * * * *

- (36) 회토류 자석
2. 제조, 가공에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 : 생략
 3. 원자재의 생산과 제품의 수요가 계절적인 물품(전량 수출하는 것에 한함) : 생략
 4. 수출진흥 및 가공무역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 생략

전자제품 수입 추천 요령 공고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80호

대외무역법 제18조 제1항 및 상공부 고시 제87-40호 규정에 의거 수입추천 품목에 대한 추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8년 1월 8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 다 음 -

1. 추천대상품목 : 별표
2. 국내의 경기동향 국제수지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입추천 기준에도 불구하고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추천기준
 - 가. 국산불가품목
 - 1) 국내공급 불가능 품목은 국내 생산업체의 생산품목을 참고하여 검토한다.
 - 2) 개발용 및 특수용도로 사용할 품목은 물량을 제한하여 수입추천 기준에도 불구하고 수입추천할 수 있다.
 - 나. 위원회 상정

국내공급 가능여부를 추천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수 없는 품목
 - 다. 별도기준

관련업체 회의 등에 의하여 별도기준을 정하는 품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 라. H. S 8471류는 상공부 고시 83-36호의 전자계산기 수입계획 확인요령에 의한.
 4. 처리기간
 - 가. 국산 불가 품목 : 1 일
 - 나. 추천심의회 품목 : 7 일
 - 다. H. S 8471류
 - 추천심의회품목 : 심의회 결정일로부터 2 일 이내
 - 추천심의 이외의 품목 : 3 일 이내
 5. 구비서류

- 가. 수입승인 신청서 : 5 부
 - 나. 물품매도확약서 사본 1 부
 - 다. 카다로그 또는 견본 1 부
 - 라. 형식승인서 또는 품질검사 합격서
(단, 시료수입 및 적용배제 해당의 경우는 제외)
 - 마. H. S 8471류
 1. 전자계산기 수입계획확인 신청서 1 부
 2. 수입계획 확인서 2 부
 3.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OFFER) 사본 1 부
 4. 전자계산기 설치계획서 1 부
 5. 기기설명서(CATALOG 포함) 1 부
- 부 칙
1. 이 요령은 198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수입 추천받은 것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H. S	품 목 명	추천대상품목	수입요령
1514	유채유(채종과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취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콘덴서제조용 절연유	
10 1000	유채류(조유)		
90 1010	유채유(정제유)		
90 9000	유채유(기타)		
8519	테이프(레코오드)	콘덴서제조용 절연유	
	레코오드 플레이어·카세트플레이어와 기타의 음성재생기기(음성 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에 한한다)		
	기타의 레코오드 플레이어		
21 1000	디지털 신호 방식의 것, 확성기를 갖추지 아니한 것		

공지사항

H. S	품 목	추천대상품목명	수입요령
21 9000	기타, 확성기를 갖추지 아니한 것	테테이블 레코드 플레이어	
29 0000	기타 확성기를 갖춘 것		
31 0000	테테이블(레코오드릭) 레코오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39 1000	기타 디지털 신호방식의 것		
39 9000	기타 레코오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추지 않은 것		
8521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는 재생용기기는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것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는	○자동추천 - 3/4이상의 테이프를 사용하는 녹화재생기 - VIDEO TAPE 등 시험녹재생기(VTR 및 테이프생산업체)
10 1000	비디오 카메라 내장형의 것		
10 9010	기타, 폭 12.7 밀리미터 초과		
10 9020	기타, 폭 12.7 밀리미터 이하		
90 1000	기타 디스크형의 것		
90 9000	기타		
8525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		

H. S	품 목	추천대상품목별	수입요령
30 1000	전 카메라 텔레비전 카메라 녹화기용의 것	텔레비전 카메라	
30 2000	텔레비전 카메라, 모니터용의 것		
30 9000	텔레비전 카메라 기타		

H. S	품 목	수입계획확인	수입요령
8471	자동자료 처리 기계와 그 단위 기기 및 타호에 분류되지 않은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천공기·검공기 이외의 전품목	
91 1000	중양처리장치의 자료 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의 것으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의 것		
91 2000	중양처리장치의 자료 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의 것으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의 것		
91 9000	기타 디지털형 처리장치		
92 1010	문자(표식)독취장치		
92 1020	키 입력장치		
92 1090	기타 입력장치		

공지사항

H. S	품 목	수입계획확인	수입요령
92 2010	프린터		
92 2020	테이터 디스플레이 장치		
92 2090	기타 출력장치		
92 3020	비디오텍스 또는 텔레텍스		
92 3030	음성 입출력장치		
92 3090	기타 입출력점용의 것		
93 1000	주 기억장치 (알에이엠 및 알오엠)		
93 2010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93 2020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93 2090	기타 보조기억장치		
93 9000	기타 기억장치		
99 0000	기타		

전자 및 전기제품의 국산개발 소요부품 수입 추천 요령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81호

상공부 고시 제87-41호(수출입 별도공고) 제3장(기계류의 국산개발 소요부품의 수입)에 의하여 한국전자공업진흥회(이하 "본회"라 한다)장이 추천토록 된 전자 및 전기제품의 국산개발 소요부품 수입추천(이하 "수입추천"이라 한다)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을 확인하여 수입추천한다.

1988년 1월 8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 다 음 -

제 1조(목적) 이 요령은 전자 및 전기 제품의 국산 개발에 소요되는 부품의 수입추천 요령을 정함으로써 동제품의 국산개발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대상품목)

- ① "별표"에 계기된 품목
- ② "별표"에 계기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상공부장관이 인정하여 본회 회장이 추천토록 하는 품목

제 3 조(신청대상자) 제 2조에 해당되는 품목을 생산, 제조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부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제 4 조(수입추천신청서류)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회 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부품국산화추진세부계획서 (별지 1호서식) : 5부(신규신청시에 한함)
2. 부품수입추천신청서 : 2부(별지 2호서식)
3. 회로도 및 설계도면 : 1부(신규신청시에 한함)
4. 당해품목의 제조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부
5. 물품매도 약약서 : 1부

제 5 조(국산화추진 세부계획서 작성요령)

- ① 신청업체는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을 수립,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산화의 경제적, 기술적 우선순위
 2. 연도별 국산화를 제고
 3.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경우 수입선 전환 가능 여부
- ②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서는 개별부품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품의 조립체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산화율을 산정할 때는 국산완료 부품의 금액을 전체 소요부품 금액의 합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때 국산화율은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자리로 한다. 다만, 시스템의 경우와 같이 동일 품목의 구성부품 변경이 빈번한 품목의 경우에는 기준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서를 따로 작성하여 동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서상의 국산완료 부품의 금액을 총소요 부품 금액의 합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 ④ 제 4 조(수입신청서류)의 1, 2항의 양식에 있어서 단가 및 금액은 동일화폐 단위로 한다.
- ⑤ 기 확인 추천된 이후 부품가격이 변동(반제품

공지사항

을 부분품별로 세분화하여 부품가격이 변동되었을시도 포함) 되었을 때에는 최초 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국산화율을 산정하며 최초 년도 가격 옆에 변동된 가격을 괄호 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6 조 (추천기준)

① 본회 회장은 신청업체의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서에 대해 제 2항의 “국산화계획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통해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소요부품의 수입을 추천한다. 다만, 신청업체가 1차년도 국산화추진 세부 계획대로 이행하였거나 그 이상으로 국산화율을 제고하였을 때 또는 심의회가 따로 정한 기준을 상회하였을 때는 심의회를 생략하고 수입추천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장은 위 ①항의 국산화추진 세부 추진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산화대상분야별 또는 품목별로 관련기관, 생산자 또는 그 단체, 연구기관, 학계 등의 실무전문가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③ 심의회는 제 1항을 심의하는데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국산화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2. 부품의 국산개발 사용계획과 품목별, 국별, 수입계획
3. 연도별 국산화율 제고계획
4.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경우 수입선전환 가능성 여부
5. 신청업체와 부품업체간에 국산화에 관한 이견이 있을시 의견 조정
6. 신청수량의 적정성
7. 기타 국산화촉진에 관한 사항

① 본회 회장은 신청업체의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서에 대하여 신청서류 작성의 정확성 검토, 자료조사 등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지원을 한다.

제 7 조 (수입추천 수량 및 유효기간)

① 수입추천 수량은 신청업체의 6개월간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이내로 한다.

② 수입추천 유효기간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추천 시에는 국산화 계획년도 종료일 이내로 한다.

제 8 조 (추천내용의 일부변경) 기 추천받은 자가 다

음 각호 1에 해당되어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서 또는 부품수입추천서 일부를 변경 추천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추천할 수 있다.

1. 일부 부품의 규격 또는 가격변경
2. 일부 부품의 삭제 또는 추가
3. 유효기간 이내에 추천받은 물량을 추가코자 할 때

제 9조(처리기간) 수입추천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심의회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5일이내로 한다. 이때 공휴일과 신청자의 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0조(국산화계획 확인 추천서류) 이 요령에 의해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서를 확인하여 수입 추천할 때에는 확인된 부품국산화 추진세부계획서 1부와 부품수입추천서 1부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제 11조 (수수료)

①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산화계획 확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요율은 상공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본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조(국산화촉진사업) 본회 회장은 이 요령에 의한 신청자의 부품 국산화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부품공동개발, 신개발 및 수입부품 전시회, 부품총람발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13조(제재)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수입추천서상에 국산부품을 사용할 것으로 추천을 받은 후 이를 수입하여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14조 (기타)

①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청업체로부터 참고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이 공고는 198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지사항

전자 및 전기제품의 국산개발 대상품목

H S	대 상 품 목
8471	컴퓨터, 단말기기(키입력장치, 광학식 인식장치, 음극선판단말기, 도형장치 등) 보조기억장치(FDD, HDD, MTU 스트리머) 프린터
8476	자동판매기
8509	진공소제기
8517	전자식교환기, 반송장치, 모사전송기, 기타의 유선통신기기
8525	방송용기기, 무선전화기, 녹화용 카메라,
8526	M/W장비, 기타의 무선기기(Pager, 무선
8527	원격조정기 등)
8528	
8537	콘트롤러(NC, CNC, Robot 등)
9018	전기식 의료기기
9022	X선 또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전기식 의료기기, 화물검색기
9031	어군탐지기
8521	VTR

[별지 1 호]

- (양식 1) 국산화추진세부계획서 : 생략
- (양식 2) 부품국산화추진세부계획 : 생략

[별표 2 호]

- (양식 1) 부품수입추천신청서 : 생략
- 수입승인확인서 : 생략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추천 요령중 일부 개정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83호

상공부 출진 28101-3387호('87. 12. 23)에 의거 본회 공고 제75호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추천 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7년 12월 30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 다 음 -

○ 추천대상품목

H S	추천대상품목	비 고
3818-00-1000	○ 반도체 제조용 실리콘웨이퍼	○ 구경 5", 6"의 것에 한함 Polished Wafer 한함
7011-20-1000	○ C-TV 브라운관용 유리	
7410-21-1000	○ 동박적층판(정제한것)	○ PCB 제조용의 것에 한함
7410-22-1000	○ 동박적층판(동합금의 것)	

부 칙

1. 이 요령은 '88. 1.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수입추천 받은 것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관세할당 추천요령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85호

관세법 시행령 제 4조의 16(할당관세),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사 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348호) 및 상공부 소관품목에 대한 관세할당 추천요령(상공부 공고 제87-80호)에 의거 본회 소관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관세할당신청 및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8년 1월 5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1. 신청자격

- 가. 실수요자 및 실수요자단체
- 나. 당해 물품생산자(물자수급 원활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다. 무역거래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상기 가, 나 항의 자와 수입대행 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2. 추천대상품목 등

- 가. 추천대상 품목 및 업체, 한계수량, 세율(별표)
- 나. 이 공고에 의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내수용에 한한다.

공지사항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세율 (%)	한 계 수 량	대 상 업 체
2804	규 소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의 것에 한함.	10	30메트릭톤	반도체 제조용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
2820	이 산 화 망 간	건전지 제조용의 것으로서 순도가 90% 이상의 것에 한함.	15	2073메트릭톤	건전지 제조업체
3920	폴리프로필렌 필름	콘덴서 제조용의 것으로서 두께가 1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것에 한함	15	1480메트릭톤	콘덴서용 필름 제조 및 가공업체
6903	흑 연 도 가 니	외경이 130mm 이하이고 높이가 110mm 이하의 것에 한함.	15	60천개	증착폴리에스터 필름 제조업체
7018	유리제의 비드	지름이 1.41mm이상 2.0mm 이하의 것에 한함.	20	160메트릭톤	비디오 테이프 제조업체
7108	금 선	지름이 0.4±0.05mm의 것에 한함.	10	100kg	반도체 제조용 세금선 제조업체
8207	텅스텐카바이드 드릴 비트	지름이 2.0mm 이하의 것에 한함.	15	1590천개	PCB 제조업체

3. 구비서류

- 가. 관세할당 추천신청서 1통
- 나. 수입허가서 사본 1통
- 다. 선하증권 사본 1통
- 라. 수입허가 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
(수입대행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 마. 기타 추천서에 필요한 서류

4. 처리기간

즉시(3 근무시간이내)

5. 추천서 유효기간의 연장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전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추천서의 분할

추천서를 교부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서 분할신청서에 분할코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추천서의 반납

관세할당을 받은 자가 할당된 수량 또는 그 잔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타 할당된 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 추천서를 본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 1. (시행일)이 공고는 1988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2. (다른공고의 폐지) 다음 각호의 공고는 이를 폐지한다.
 - 가.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70호('87. 1. 5)
 - 나.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72호('87. 6. 15)

해외시장 개척자금 용자 추천안내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의욕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86. 9월부터 해외시장 개척자금 용자 추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86. 9월 - '87. 11월말 기간중 총 78개 업체에 30억 4,900만원이 대출되어 국내업체의 해외현지 지사 설치, 전시, 박람회 참가, 세일즈 출장 등 각종 시장개척 관련사업에 투입, 관련업체의 수출 실적 거양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등 용자추천 지원제도의 내업체 지원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심있는 업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

공지사항

1.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자금 융자 추천(일본 지역 별도)
 - 가. 지원대상 사업
 - 수출용 카달로그 제작비
 - 해외세일즈 및 마케팅조사 출장비
 -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 해외바이어 초청비
 - 선진국상품 규격심사 신청비
 - 나. 추천대상업체 : 중소기업, 중견수출기업
 - 다.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 - 3년
 - 한도액 : 1업체당 2천만원(지원대상 사업당 1천만원)
 - 라. 대출은행 :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2. 일본시장 개척자금 융자추천
 - 가. 지원대상 사업
 - 사무소, 지점 또는 현지 판매법인 설치, 운영
 - 수출촉진 행사참가 및 상설전시장 설치
 - 세일즈 출장 및 사절단 참가, 바이어 초청
 - 카달로그 제작, 현지상품 홍보 등 일본 시장개척 관련사업
 -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견수출기업 / 조합 및 협회
 - 다. 융자조건
 - 대출기간 : 3년 이내(단, 지사설치 등은 10년 이내)
 - 한도액 : 소요자금의 100%
 - 라. 대출은행 : 한국외환은행
3. 신청서류 : 융자금 추천신청서(KOTRA 소정양식) 1부
 - 사업추진계획서(KOTRA 소정양식) 1부
 - 각서(KOTRA 소정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납세완납증명서 1부

기타 관련증빙서류

4. 문의처 : KOTRA 시장개척부 시장총괄과
(전화 : 753-4181/9, 교환 323)

'88년도 산재보험요율 고시 및 적용확대 안내

노동부는 '87. 12. 15자 노동부 고시 제87-81호로 '88년 산재보험 요율을 결정 고시한바 있다.

이번 확정된 전산업 평균요율은 1천분의 16.4로써 87년 17.8에 대비 1.4포인트 인하된 것으로써 기업의 '88년 개산보험료 부담이 평균 7.9%나 경감되게 되었다.

이러한 대폭적인 요율 인하는 각 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하여온 결과이며 요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일부 업종의 기업에서도 재해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재해로 인한 인적 손실과 경제적 부담을 극소화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88년 1월 1일부터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등 16개 업종에 대하여도 상시 5인 이상으로 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제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상시 5인 수준으로 그 적용 기준이 전면 확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적기에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그 소속 근로자와 기업이 다같이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88년 1월 1일부터 상시 10인에서 5인으로 적용 확대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신문 화폐발행 및 출판업, 경인쇄업, 수제품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 전기·가스업, 수도업,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 운수업, 운수관련 서어비스업, 농수산물 위탁 판매업, 위생 및 유사서어비스업,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기타의 각종사업(음식 숙박업 포함)

에너지 절약에 Q.C기법을 활용하자.